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434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일부 면제 및 수수료 면제분 충당을 위한 신용공여 제도 도입(서영교의원안)	3

I. 개요

1.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43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12.
- (3) 회 부 일 : 2024. 12.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국세의 납부방법으로 현금이나 유가증권 이외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납부를 매개하는 금융회사와 같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두면서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수료를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와 달리 지방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납부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납부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공여 계약을 맺음으로써 대행기관이 부과하지 못하는 납부 수수료를 충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임.

한편,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된 2020년도 국세수입은 약 14조 424억원으로 이와 관련된 납부대행 수수료가 약 1,123억원에 이르는 데, 이러한 대규모의 납세대행 수수료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여력이 없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더욱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미부과된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대행기관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게 하는 신용공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일부 면제 및 수수료 면제분 충당을 위한 신용공여 제도 도입(서영교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국세 납부의 방법(제12조) ○ 납부방법(제1항) - 현금(계좌이체 포함)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수표) -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의 결제수단(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제2항) ○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 <신 설> ○ <신 설>	□ 납부대행 수수료 일부 면제 및 국세(세액 일부)의 신용공여로 수수료 면제분 충당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세자에게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 신설 ○ 저소득자*에 대한 납부대행 수수료 부과 면제 -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분 충당: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승인한 세액의 일부를 신용공여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달인 납세자

* 서영교의원안 2024. 12. 12. 발의(의안번호 6434)

□ 현행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납부방법을 현금, 증권(수표), 국세 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¹⁾을 통해 처리되는 결제수단(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규정하면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동법 시행령 제9조제5항²⁾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시 해당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인 경우 0.5%로 부과하고 있음.³⁾

[국세의 카드납부에 따른 수수료 현황]

구 분	내 용
수수료 총액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 금액의 0.8% 체크카드 결제 시 결제 금액의 0.5%
금융결제원 귀속분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이용수수료)	건당 260원
금융결제원 귀속분 외 (신용카드사 납부대행 수수료)	카드사 및 위탁은행에 귀속

또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이용 수수료(금융결제원 귀속분)에 더하여 신용카드사가 해당 결제를 처리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신용카드사 납부대행 수수료(금융결제원 귀속분 외)도 발생하는데 이 수수료는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받

1) 현재 유일한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세금납부와 관련된 결제시스템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와의 연결을 통해 납세자와 세무당국간의 세금납부 처리를 지원하고 있음.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납부의 방법)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해당 납부세액의 1.5%→'10. 4. 1.부터 1.2%→'12. 4. 1.부터 1.0%→'14. 12. 8.부터 1.0%(체크카드의 경우 0.7%)→'16. 1. 31.부터 0.8%(체크카드의 경우 0.7%)→'18. 5. 1.부터 0.8%(체크카드의 경우 0.5%)

생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런데, 국세와 달리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⁴⁾하는 경우에는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이용수수료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납부대행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고 있음.⁵⁾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지방세 납부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공여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납부대행수수료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임.⁶⁾

신용공여란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카드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카드사가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로써, 카드사는 납세자들이 카드결제일에 납부한 돈을 최장 약 40일간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내 납세의무자의 납부대행 수수료 부담을 없애고 있음.

- 한편,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 납부하더라도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금융공동망을 이용하여야 함.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의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금융공동망을 이용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고, 신

4) 현재 지방세 납부수단은 현금(수표), 신용카드(직불카드)가 있음.

5) 매일경제,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논란 “소득세 등 국세 내는데 카드 수수료도 내가 부담한다구?...국세 납부제 논란” (2023. 10. 5. 기사)

6) 「지방세징수법」 상 신용공여 근거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사가 협약을 맺어 신용공여 활용 중이며, 신용공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22. 발의,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용카드를 통해 납부한 지방세분의 신용카드사 납부대행 수수료는 신용공여로 인해 충당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별도의 수수료는 없는 상황임.

반면,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시 납세자가 별도의 수수를 내고 있고, 이를 신용카드사와 금융결제원, 위탁은행⁷⁾이 분담하여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이용수수료와 신용카드사 납부대행 수수료를 충당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관련 정책이 다른 실정임.

[국세 및 지방세 카드납부 현황]

구분	국세	지방세
수수료 부담 주체	납세자 부담	① 신용카드사 자체부담(신용공여) ② 금융결제원 이용수수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건당 80원)
수수료 귀속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위탁은행	-
세금 입금 시기	신용카드 승인 후 2영업일 후에 국고계좌로 세입 - 카드사 자기비용으로 선 납부	신용카드 승인 후 다음달 13일에 금고은행으로 세입 - 카드사는 납세자의 신용카드 결제 일부터 금고은행으로 세입되는 기 간 동안 세금납부액 운용 가능
세금 입금 시기 근거	「국고금 관리법」 ⁸⁾ 및 국세청, 금융결제원, 신용 카드사, 위탁은행 간 협약	지방자치단체,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사, 금고은행 간 협약

자료: 기획재정부

7) 신용카드사에서 한국은행 국고로 바로 입금할 수 없으므로 위탁받아 국고계좌를 개설한 은행

8)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수납기관) ① 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장이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사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 한편,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된 2023년도 국세수입은 약 20조 3,514억원(2023년 기준 전체수납액의 5.2%)으로 이와 관련된 납부대행 수수료가 약 1,534억원(2023년 기준)에 이르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여력이 없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밖에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임.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연도별 납부대행수수료 배분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국세 전체 수납(A)	신용카드 등 납부금액(B)	신용카드 등 납부비율 (B/A)	납세자 수수료 (C)	수수료 배분			카드사 귀속분
					신용 카드사 (C-D-E)	납부대행기관 운영경비		
						금융 결제원 (D)	위탁 은행 (E)	
2012	1,971,027	21,644	1.1	216	212	3.5	0.5	98.18%
2013	1,994,877	26,225	1.3	262	257	4.4	0.6	98.09%
2014	2,105,462	31,168	1.5	312	306	5.0	0.7	98.16%
2015	2,326,694	189,022	8.1	1,836	1,830	5.8	0.8	99.64%
2016	2,524,671	424,002	16.8	3,389	3,382	6.4	1.0	99.78%
2017	2,760,659	209,765	7.6	1,655	1,646	7.3	1.1	99.49%
2018	3,066,392	102,026	3.3	801	791	8.2	1.3	98.82%
2019	3,097,600	114,534	3.7	879	869	8.9	1.4	98.83%
2020	3,201,687	140,425	4.4	1,073	1,063	8.4	1.3	99.10%
2021	3,720,468	163,672	4.4	1,256	1,246	7.9	1.2	99.27%
2022	4,201,474	216,674	5.2	1,662	1,651	9.6	1.5	99.33%
2023	3,938,367	203,514	5.2	1,534	1,523	10.2	1.6	99.23%

자료: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

2014. 12. 23. 「국세기본법」 개정시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그 납부한도를 폐지하여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발맞추어 카드사들이 세금을 카드 납부할 때 무이자 할부, 포인트 납부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게 되었음.

그 결과 세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며, 국가는 신용카드로 효과적인 세수 확보, 행정비용 감소 등의 혜택을 누리고, 카드사는 카드사대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반면 비용 부담을 국민이 지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미부과된 수수료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운용하게 하는 신용공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저소득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세·지방세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

음.

첫째, 신용공여 도입으로 국세의 국고 수납이 지연되는 경우 국고금 운영수익에 대한 기회비용 또는 추가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로 국가재정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

둘째,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 충당을 위해 신용공여 제도 도입 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저소득 납세자의 국세 납부분을 구분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는 결국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있음.

셋째, 수익자부담의 측면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결제일까지 실제적인 납부기한이 연장(30~40일)되어 기간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한편, 기획재정부는 신용공여방식을 통한 수수료 면제 시 정부는 일시차입 확대가 불가피하고 관련 비용은 결국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문제가 있고, 신용공여방식 도입 시 국고금 수납 지연 및 자금 운영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어 신용공여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47